

강원도의회 제293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3회 임시회(7. 3. ~ 7. 15.)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3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총 10건 : 도지사 2, 교육감 3, 의원 5 *제안자 구분

위 원 회	의안명(조례안)	제안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7. 15.)
사회문화 위 원 회 (2)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농림수산 위 원 회 (1)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효동 의원	원안
경제건설 위 원 회 (1)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교 육 위원회 (6)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준섭 의원	수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원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주 의원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7. 15.(수)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 공동발의: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6)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및 재원을 확보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박효동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고성)
- 공동발의: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양), 김진석 의원(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창2),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2), 최재연 의원(교육위원장·미래통합당·철원1)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진석 의원



신명순 의원



최재연 의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 공동발의: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2)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및 교육적 피해를 본 상황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감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교육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조례안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준섭 의원

박윤미 의원

김혁동 의원

윤석훈 의원

정유선 의원

박인균 의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2)
- 공동발의: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비연고지 순환근무가 많은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관사의 보유근거 마련을 위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정 내용은 제50조의 제목 “(관사의 구분)”을 “(관사보유와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준섭 의원

김혁동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2)



강원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 구입비 지원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지원대상이 교복을 입는 학교 신입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맞춰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교복 구입비 지원 방법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이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